

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43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10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市와 디자인재단으로 나뉘어져 있던 패션지원 정책을 일원화하여 동대문 상권 활성화와 패션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'서울패션허브'를 조성하여 '21년 4월부터 민간위탁운영 중에 있음
- 나. '서울패션허브'는 패션산업 분야 창업기업과 소공인에게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한 핵심시설로 '24년 3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
- 다. 이러한 패션허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패션산업 및 관련 IT기술과 교육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'서울패션허브'를 재위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운영개요

- 위치 : DDP패션몰(4·5층) 및 동대문종합시장(B동 4층)
- 사업내용 : 서울패션산업 생태계 혁신 거점공간(허브시설) 운영
- 규모 : 창작뜰(1,369㎡) / 배움뜰(1,540㎡) / 창업뜰(3,140㎡)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- 「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계획」('23.10.13.)

○ 추진 필요성

- 패션허브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패션산업 및 패션관련 IT 기술과 교육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, 민간위탁을 통해 패션산업 생태계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

다. 위탁개요

○ 사 무 명 :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

- 대상시설(3개) : 창작뜰, 배움뜰, 창업뜰

○ 위탁기간 : 2년 9개월 ('24. 4월 ~ '26. 12월)

○ 위탁방식 : 시설형 민간위탁

○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 (재위탁)

○ 위탁금액 : 5,770백만원 ('24년 예산안) ※23년 예산 : 6,320백만원

○ 위탁사무

- 서울패션허브 사업운영, 시설물 운영 및 안전관리 전반
- 창작뜰 첨단장비 운용, 장비활용 교육 및 생산·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기획·운영
- 배움뜰 혁신인재 육성 및 예비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창업뜰 입주기업 발굴 및 성장·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기획·운영
- 동북권 패션지원센터 운영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라. 위탁시설 현황

구 분	창작뜰(디쓰리디)	배움뜰(한국패션실용전문학교)	창업뜰(크리에이티브팩토리그룹)
개 소	'21. 4월	'21. 6월	'21. 5월
위 치	DDP패션몰 4층	DDP패션몰 5층	동대문종합시장 B동 4층
규 모	1,369㎡(약 415평)	1,728㎡(약 523평)	3,140㎡(약 950평)
사용형태	시 소유	시 소유	민간건물 임차 (보증금 4억, 월 173,800천원)
공간구성	자동재단실, 메이커스스튜디오, 봉제작업실, 디자인라운지 등	강의실, 디지털학습실, 개인학습실, 인큐베이팅실, 실습실, 소통공간 등	입주공간, 비즈니스센터, 회의실, 촬영스튜디오, 시제품 제작소 등
비 고	 <정문>  <재단봉제실>	 <실습실>  <인큐베이팅실>	 <입구>  <입주사 사무실>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) ②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
2.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
4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

제9조(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) ①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,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

3.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
5.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12조(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원센터 운영의 위탁) ①시장은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4년 예산안 반영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